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8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9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」와 「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」를 「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로 통합 및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
- 문화예술진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 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지정·육성하고자 지정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가.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함 (제3조)
- 나.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,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지정,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·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(제4조)

다.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범위와 지정절차를 정함 (제10조)

-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·단체
- 극단, 무용단, 국악단 등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·단체
-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·단체를 2년간 지정

라.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를 지원·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(제11조)

마.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조성함 (제12조, 제13조)

바.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에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공고하고 기금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함 (제14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,
- 기존에 운영하던 「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」와 「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」 등 2개 조례를 통합하고,
-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, 개정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의 지정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